(재)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업무 인계인수서

인계자			인수자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이철호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학장	박현진
인계 사유	이철호 이사장의 사임 및 박현진 신임 이사장 취임				
인수인계 내용	1. 재정 현황 2. 문서 현황 3. 도서 현황 4. 정관				
참고사항	* 첨부자료 참조				
기타					
2020년 4월 29일					
인계인	이철호 (인)	인수인	박현진 (인)	입회인	박관회 (인)

1. 재단 재정 현황

2020년 3월 31일 현재

전월 이월	28,461,096
수 입	60,548,473
지 출	13,724,928
퇴직적립금	20,000,000
출연금	100,000,000
이월금	195,284,641

2. 재단 문서 현황

2020년 3월 31일 현재

<행정 업무>

1. 공문서
2. 지출결의서
3. 수입·지출 내역 장부
4. 업무일지
5. 재단연보 (1~10차년도)
6. 연구과제 계약서 및 최종보고서 (과제별)
7. 기부금 영수증 & 발급대장
8. 재단 이사회 - 회의자료 및 회의록
9. 재단 정관 - 정관변경 및 임원등기 자료
10. 식량안보 간담회 (1~20회 자료)
11. 식량안보 세미나 (1~24회 자료)
12. 식량낭비줄이기 국민운동
13. 홈페이지 업로드용 자료 (보고서, 논문, 뉴스레터 등)

<도서출판 식안연>

1. 출판 계약서
2. 출판공급명세서
3. 출판용 파일(도서별)
4. 전자출판용 파일(도서별)
5. 도서재고 현황

도서 재고 현황

2020년 3월 31일 현재

도 서 명	정가	출판부수		사무실 재고	물류정품재고		물류반품재고		재고 총 금액	판매대금 (할인율60%)
		초판	중판		정품 재고	정품 재고금액	반품 재고	반품 재고금액		
음식오케스트라	8,000	1,000		24	68	544,000	104	832,000	1,376,000	550,400
2030년을 예측한다 식량전쟁	12,800	1,000	1,000	7	60	768,000	48	614,400	1,382,400	552,960
식품산업 한식세계화에 날개달다	25,000	2,000		9	258	6,450,000	77	1,925,000	8,375,000	3,350,000
한반도 통일과 식량안보	16,000	1,000	500	8	20	320,000	37	592,000	912,000	364,800
과학이보인다1 (과학의역사)	13,800	800		11	0	-	44	607,200	607,200	242,880
과학이보인다2 (동아시아의과학)	14,800	800		11	4	59,200	46	680,800	740,000	296,000
과학이 보인다(개정증보판)	17,000	500		11	271	4,607,000	27	459,000	5,066,000	2,026,400
FOOD WAR 2030	20,000	500		10	88	1,760,000	28	560,000	2,320,000	928,000
선진국의 조건 식량자급	15,000	1,000	800	64	266	3,990,000	18	270,000	4,260,000	1,704,000
나트륨, 건강 그리고 맛	8,000	2,000	1,000	50	455	3,640,000	27	216,000	3,856,000	1,542,400
건강지킴이 보리의 재발견	8,000	1,000		14	573	4,584,000	43	344,000	4,928,000	1,971,200
GMO 바로알기	12,000	2,000	4,500	48	313	3,756,000	54	648,000	4,404,000	1,761,600
Korea Unification and Food Security	25,000	500		8	29	725,000	27	675,000	1,400,000	560,000
쌀의 혁명	10,000	1,000		52	45	460,000	17	170,000	630,000	252,000
광복70년 인생70년	12,000	1,000		1	79	948,000	31	372,000	1,320,000	528,000

도 서 명	정가	초판	중판	사무실 재고	정품 재고	정품 재고금액	반품 재고	반품 재고금액	재고 총금액	판매대금
식량낭비 줄이기	12,000	1,000	500	37	406	4,872,000	28	336,000	5,208,000	2,083,200
목소리와 견해	12,000	1,500		116	115	1,380,000	17	204,000	1,584,000	633,600
한·중·일 식량정책 비교	16,000	800		10	157	2,512,000	21	336,000	2,848,000	1,139,200
콩 스토리텔링	20,000	1,000	500	21	447	8,940,000	20	400,000	9,340,000	3,736,000
신 육종기술	12,000	500		22	179	2,148,000	12	144,000	2,292,000	916,800
21세기 구원투수: 고구마	12,000	500	500	9	280	3,360,000	24	288,000	3,648,000	1,459,200
세계 곡물시장과 한국의 식량안보	20,000	500		13	19	380,000	2	40,000	420,000	168,000
4차 산업혁명과 식량산업	16,000	1,000		11	450	7,200,000	23	368,000	7,568,000	3,027,200
Yes to GMOs	12,000	2,000		118	104	1,248,000	19	228,000	1,476,000	590,400
건강100세 장수식품이야기	18,000	1,500		46	111	1,998,000	17	306,000	2,304,000	921,600
요셉의 지혜- 한반도 식량비축 계획	16,000	1,000	500	30	77	1,232,000	11	176,000	1,408,000	563,200
비만과의 전쟁	12,000	500	600	16	46	552,000	5	60,000	612,000	244,800
식품산업과 식량안보	18,000	500	500	47	310	5,580,000	1	18,000	5,598,000	2,239,200
방사능 · 방사선 & 식품안전	16,000	500		9	0	0	55	880,000	880,000	352,000
총 액									**86,762,600**	**34,705,040**

● 재단 연보 재고 : 1차(70부), 2차(220부), 3차(10부), 4차(20부), 5차(120부), 6차(60부), 7차(90부), 8차(100부), 9차(70부), 10차 (200부)

● 비매품

* 식물 생명공학 101 (3,000부 인쇄) - 재고 170부 (2020.04.20. 현재)
* 처음 10년을 돌아보며 (500부 인쇄) - 재고 76부 (2020.04.20. 현재)

정　　관

- 변경 1차 : 2012. 05. 16 (임원변경)
- 변경 2차 : 2013. 04. 17 (사무실 주소 및 임원변경)
- 변경 3차 : 2015. 05. 06 (임원변경)
- 변경 4차 : 2016. 04. 29 (임원변경)
- 변경 5차 : 2016. 11. 24 (임원변경)
- 변경 6차 : 2017. 04. 25 (임원변경)
- 변경 7차 : 2018. 05. 14 (정관세부사항변경)

재단법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재단법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 Food Security Research Foundation (약칭 KFSRF)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식품산업의 식량공급 주체로서 식품산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지원 육성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연구하여 궁극적으로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이 양축을 이루는 식량안보 정책수립과 실천에 기여함으로서 국가의 장기적인 식량 수급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 (안암동5가) 에 둔다.

제4조(사업) ①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 식량안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에 관한 연구
3. 식량안보 및 식품안전 분야 정책 개발 연구
4. 식품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 교류 협력
5. 식품안전 위해분석 전문가 교육 및 육성
6. 식량 외교통상 전문가 교육 및 육성
7. 기타 식량안보와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교육 및 홍보

②이 법인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임원

제5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이상 15인이하(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이하
4. 고문 약간 명

제6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이사 선임의 제한)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5조 ①항 2호 이사정수의 5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1항 규정에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창립당시 이사장은 선임된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

를 관장 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1조(이사장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장기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즉시 이사 중에서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를 호선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②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③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④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⑤제4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① 법인의 목적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④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제3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③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④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⑤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⑦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17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8조(회기)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③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5항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및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하는 때에 개최한다.

제19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

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전원이 모여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의사록) 이사회는 의사진행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4장 운영

제21조(사무국) ①이 법인은 사업계획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의 운영내규는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2조(연구 분과 및 자문위원회) ①사무국은 연구 분과와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구 분과 및 자문위원회의 명칭,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3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24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연구용역 등의 사업수익,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25조(회계) ①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법인의 회계는 정규 부기의 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법인에 기탁된 기부금은 연간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익년 3월 31일까지 법인의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6조(사업계획 등) 이 법인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7조(결산서 등)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늦어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28조(잉여금의 처리) 법인의 각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순서로 처리한다.

①이월 손실금의 보전

②다음 년도 사업비용으로 이월

③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제29조(재산의 관리) ①제23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운영규정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1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0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 임직원의 수를 정한 경우에는 상근 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6장 감사

제31조(감사의 구분) ①감사는 회계연도마다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감사는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로 구분한다.

제32조(감사방법) ①업무감사는 조직의 적정 및 제 규정의 이행여부, 일상사무처리 등 업무운영 전반에 대하여, 회계감사는 회계 및 재산보존상태에 대하여 각각 그 적부와 그 처리상태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한다.

②정기감사는 업무감사와 회계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③감사는 감사계획서를 일주일 전에 이사장 또는 사무국장에게 통보한 후 실시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거나 이사장 또는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감사보고) ①감사는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항목별로 분석 평가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감사보고서에는 지적사항과 조치 및 건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6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7조(시행세칙의 제정) 이 정관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8조(해산)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처분)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공익재단에 기증하여야 한다.

제40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항의 사항은 이를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①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②기타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를 의결한 사항

제41조(법령의 적용) 이 법인의 설립·운영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이 적용된다.

부칙

(2010. 04. 27.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 이 법인 설립 당시의 임원은 별지2와 같다.

부칙

(2018. 04. 2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